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1.02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9년 10월 15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10월 2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10.26)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출)

가. 제안이유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추가 구성하고, 『통합방위법』에 따른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우리구 관할지역의 실질적 통합방위 작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제213연대 제1대대장 및 영등포구 국군기무담당관을 추가** (안 제3조제3항 제5호, 6호)

○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주무담당주사**에서 최종 지휘결정권이 있는 **동장**으로 격상 운영하고자 함. (안 제10조 제1항)

○ 제명 띄워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천 오 윤)**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맞게 개정하고, 제명을 한글맞춤법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기타 내용 중 “규정에 근거하여”를 “에 따라”로 “인”을 “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40 호

제출연월일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추가 구성과,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른 동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변경하고.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리구 관할지역의 실질적 통합방위 작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제213연대 제1대대장 및 영등포구 국군기무담당관을 추가** (안 제3조제3항 제5호, 6호)

나.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 동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주무담당주사**에서 최종 지휘결정권이 있는 **동장**으로 격상 운영하고자 함. (안 제10조 제1항)

다. 제명 띄워쓰기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통합방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9. 8. 6 ~ 8. 26.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50인”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장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
4. 영등포경찰서장
5. 육군제52사단213연대장, **제1대대장**
6. **국군기무부대 영등포구 담당관**
7. 국가정보원 영등포구 연락관
8. 영등포소방서장
9. 영등포세무서장

10. 우체국장(영등포, 여의도)
11. 영등포구보건소장
12. KT지점장(영등포, 여의도)
13. 재향군인회 영등포지회장
14. 자유총연맹 영등포지회장
15.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
16. 농협중앙회 영등포지점장
17.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방위지원본부의조직 및 운영”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으로 하고, 제1항 중 “방위지원본부를”을 “통합방위지원본부를”으로, “주무담당주사가 된다”를 “동장이 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본부내”를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1항의 방위지원본부”를 각각 “「통합방위법」 제9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별표 2〕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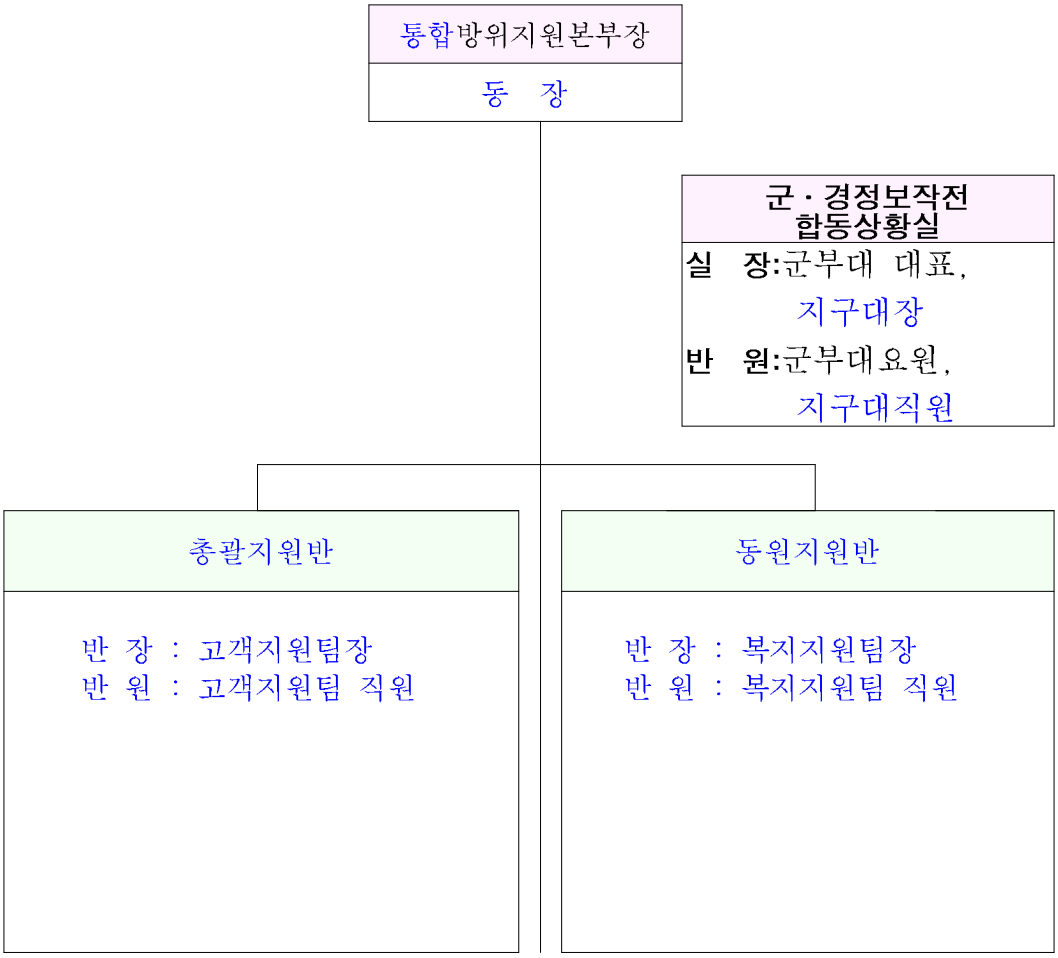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 5조 , 제 9조 및 제 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 ---------- ---------- ----------.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1인, 부의장2인, 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03.03.10〉 ②의장은 영등포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 의장이 선임하는 1인으로 하고 상임고문1인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장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 4. 영등포경찰서장 5. 육군제52사단213연대장 6. 국가정보원 영등포구 연락관 7. 영등포소방서장 8. 영등포세무서장 9. 동작세무서장 10. 여의도우체국장 11. 영등포우체국장 12. 영등포구보건소장 13. 여의도전화국장 14. 영등포전화국장	제3조(구성) ① ----------의장 1명 , 부의장 2명 ,---------- ----------50명---------- ---------- ② ---------- ---------- ------ 1명----------1명---------- ---------- ③ ---------- --- 1. 영등포구의회 의장 2.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 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 4. 영등포경찰서장 5. 육군제52사단213연대장, 1대대장 6. 국군기무부대 영등포구 담당관 7. 국가정보원 영등포구 연락관 8. 영등포소방서장 9. 영등포세무서장 10. 우체국장(영등포, 여의도) 11. 영등포구보건소장 12. KT지점장(영등포, 여의도) 13. 재향군인회 영등포지회장 14. 자유총연맹 영등포지회장

현 행	개 정 안
15. 재향군인회 영등포지회장 16. 자유총연맹 영등포지회장 17.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 18. 농협중앙회 영등포지점장 19.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자 ④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한다	15.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 16. 농협중앙회 영등포지점장 17.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자 ④----------해당----------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제 14조의 3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 2. ----------제7조에 따른 ----------
제10조(방위지원본부의조직 및 운영) ①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주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 ④ (생략)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지원본부----------동장이 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법제 9조제 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본부내에 통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법제9조제 1항의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은 영등포구청내에 두고, 동 군·경정보합동상황실은 각 동 실정에 맞게 동방위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내---------- ②----------「통합방위법」 제9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 · 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삭 제〉**

현 행

[별표 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방위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

종 합 상 황 실
실 장 : 행정관리국장
보좌관 : 감사담당관
반 원 : 각 지원반 대표 3명씩(6급1명, 7급이하 2명)
군 연락장교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실 장 : 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정보(경비)과장
반 원 : 군·경정보작전요원

총 괄 지원반
반 장:총무과장
보좌관:총무담당
반 원:총무과직원

인력동원 지원반
반 장:민원봉사과장
보좌관:민방위담당주사
반 원:총무과, 민원봉사과 직원

수 송 지원반
반 장:교통행정과장
보좌관:운수지도담당
반 원: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

건설복구 지원반
반 장: 토목과장
보좌관: 하수담당주사
반 원: 토목과 치수과, 한전영등포지점, 서울도시가스 직원

의료·구호 지원반
반장:사회복지과장
보좌관: 의무담당 주사
반 원: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영등포소방서 직원

보급·급식 지원반
반 장:지역경제 과장
보좌관:가정복지담당주사
반 원: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직원, 농협양정담당, 여성단체회원

홍보지원반
반 장: 문화체육과장
보좌관: 공보담당주사
반 원: 문화체육과 남부교육청 공보부서직원 지역방송대표

재정지원반
반 장: 재무과장
보좌관: 예산담당 주사
반 원: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영등포세무서 직원

통신지원반
반 장: 여의도전화국선로부장
보좌관: 구청통신실 선임담당
반 원: 여의도·영등포전화국 구청통신실직원

개 정 안

[별표 1]

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장
부 구 청 장

종 합 상 황 실
실 장:행정국장
보좌관:감사담당관
반 원: 각 지원반 대표 3명씩 (6급1명, 7급이하2명), 군 연락장교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실 장:군부대 작전장교, 경찰서정보(경비)과장
반 원: 군·경 정보작전요원

총 괄 지원반
반 장:행정지원과장
보좌관:총무팀장
반 원: 행정지원과 직원

인력동원 지원반
반 장: 주민자치과장
보좌관: 민방위팀장
반 원: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직원

수 송 지원반
반 장:교통행정과장
보좌관:운수안전팀장
반 원: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직원

건설복구 지원반
반 장:도로과장
보좌관:하수팀장
반 원:도로과, 치수방재과, 한전영등포지점, 서울도시가스 직원

의료·구호 지원반
반 장: 사회복지과장
보좌관: 의무팀장
반 원: 사회복지과 위생과 의약과 영등포 소방서직원

보급·급식 지원반
반 장: 지역경제과장
보좌관: 복지기획팀장
반 원: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직원, 농협양정 담당, 여성단체 회원

홍보지원반
반 장: 기획홍보과장
보좌관: 홍보팀장
반 원: 기획홍보과 남부교육청 지역방송대표

재정지원반
반 장:재무과장
보좌관:예산팀장
반 원:기획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부과과, 영등포세무서 직원

통신지원반
반장:여의도전화국 선로 부장
보좌관:구청통신실 선임담당
반 원:여의도·영등포전화국, 구청통신실직원

현 행

〔별표 2〕

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개 정 안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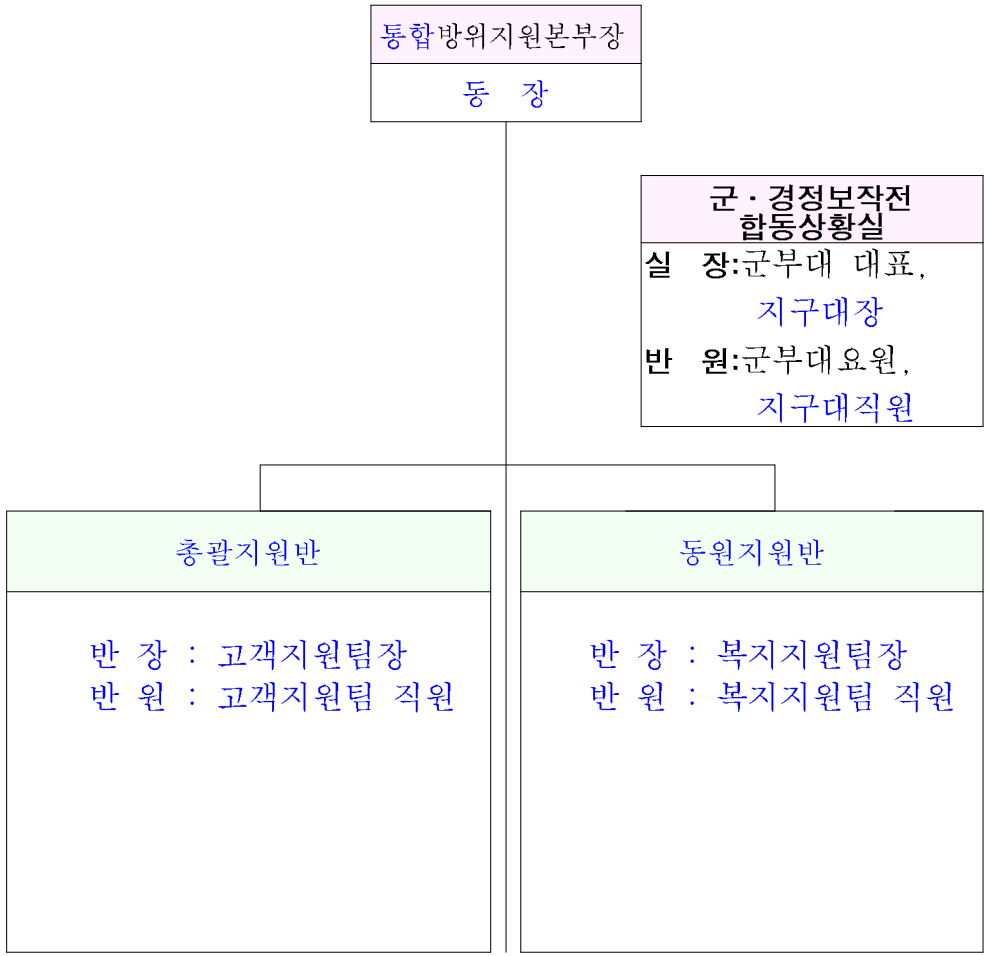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